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위생 관리 강화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27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 · 위생 관리 강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8. 19.

다. 회 부 일: 2025.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1.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위생 관리 강화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에 대하여 정화시설 설치, 수질 실시간측정, 실시간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의 의무를 두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u><신설></u>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테마파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물놀이형 테마파크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은 시설 내 풀의 수질기준을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해 두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풀의 수질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당 시설의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도록 하였음¹⁾.

「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는 여름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로 해당 기간에는 수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항상 제기되고 있고, 짧은 시간 내에도 급격하게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

1) 참고자료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참조

마파크시설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체 현황]

구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	합계
업체수	32	150	247	429

자료: 한국테마파크협회 (테마파크 안전정보망, 2025.9.9.기준)

-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수질 센서로 풀의 수질을 연속 감지시켜, 그 값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액정에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질 측정장치와 여과설비, 약품공급장치가 해당 풀이나 수처리실에 설치되어야 함.
- 그런데, 대부분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에서 유리잔류염소농도와 탁도 등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대장균군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하여 검사해야 하는 항목으로 테마파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임.
- 이에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측정설비와

측정정보 실시간제공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²⁾, 도입이 가능한 경우 관련 비용의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중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수소이온화농도,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³⁾ 있어, 기타테마파크 물놀이형 테마파크에서도 상시적인 수질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놀이 테마파크시설의 수질 확인 및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관광진흥법」 제32조에 위임받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측정 및 이용자 제공의무를 포함한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의 여지가 있고, 테마파크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한국테마파크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형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은 공간별 수처리시설에 오토 센서를 설치하여 기준치에 따라 자동 수압조절 및 약품투입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동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설치에 기술적·재정적 제약으로 국내외 설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테마파크시설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5.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항목에 관한 기준(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2.0mg/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의2. 사업자는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관찰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가.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다만, 제7호 라목 및 마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7월 및 8월의 경우에는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